

- 금융감독원이 내린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취소당하거나 집행을 정지당함.
- 금융감독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 한국소비자보호원

-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지도·감독
- 업무계획서와 예산서,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요함.

○ 금융감독위원회

- 재정경제부와의 관계
 -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감독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은 금감위와 협의하여야 함.³⁸⁾
 - 재정경제부장관과 금융통화위원회 및 금융감독위원회는 정책수행을 위해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위원장은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협조 요청

○ 공정거래위원회

- 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³⁹⁾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이나 예규·고시 등의 제정 또는 개정, 승인 기타의 처분에 대해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예규·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 제시
- 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조사 의뢰나 자료 요청
 -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 의뢰

38)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64조의2

3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3조

○ 감사원

-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결산 및 회계검사, 직무감찰 실시
- 관계기관의 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시정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회계관계법령등에 대한 의견표시⁴⁰⁾
 - 국가의 각 기관은 국가의 회계관계법령, 국가의 현금, 물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부기에 관한 법령, 감사원의 권한에 관한 법령, 자체감사업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법령안에 대해 감사원의 의견을 구하여야 함.

○ 방송위원회

- 정부와의 정책협의
 -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방송프로그램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확립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위원장의 국회 출석 답변 및 국무회의 출석 발언⁴¹⁾
 -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
 -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 건의

■ 법무부안과 공대위안

	법무부안	공대위안
국가기관 의 협조/ 협의 의무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 개정은 위원회에 통보해야 함.	·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인권관련 법령 의 제·개정은 미리 위원회와 협의하 여야 함.

40) 감사원법 제49조

41) 방송법 제22조 제3항과 제4항

	법무부안	공대위안
국가기관의 협조/협의 의무	· 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사단체에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국가기관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존중의무	위원회는 관계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사단체에 대하여 인권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고, <u>관계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함.</u>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는 인권의 보호와 신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의 재판의 경우에 위원회에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중인 사건이 인권의 보호와 신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인 경우 위원회에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계속중인 재판의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위원장의 국무회의 출석 발언	-	<u>위원장은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그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음.</u>
공무원등의 파견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또는 연구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위원회는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 쟁점사항

인권관련 법령의 사전협의 문제에 대하여

공대위는 관계국가기관의 장이 인권관련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시 미리 인권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해야 하며, 그 밖에도 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하는데, 법무부안은 단지 관계기관이 '통보'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고 비판

■ 소결

- UN핸드북은 인권위원회가 인권관련 법안과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의견 표명이나 권고의 역할을 하며 법안과 정책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의회·사법부·행정부가 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인권위원회가 수상이나 의회, 장관등을 대상으로 보고나 협의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구체적인 절차나 수준은 파악되지 않음.
- 국내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감사원이 소관하는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이나 조치의 시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들 기관과 사전 협의함.
- 인권위원회가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으로 수많은 인권관련법령을 검토하고 사전협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인권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조사·구제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때로는 협의과정에서 거의 모든 관련 정부기관들과 갈등을 일으켜 기능 수행이 저해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
- 따라서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과 보고·답변을 할 수 있고 국무회의 출석·발언과 의안제출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기회를 포함하여 수시로 인권위원회가 국회와 국무회의에 인권관련법령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인권관련 법령의 대상⁴²⁾이 너무 광범위하므로 그 범위를 명

42) 법무부의 인권법(안)은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공대위안의 인권 개

확히 한정지을 필요가 있음.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거나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권리”인 인권과 관련된 법령은 사실상 국가(입법·사법·행정)의 모든 부문에 걸쳐 있음.

따라서 당장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제외하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 인권위원회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남도 이와 유사함.

표 4) 외국의 입법례

국가	예산권	규칙제정권	직원인사권	국가기구와의 관계
호주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	총독이 시행령 제정	인권위원장, 인권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수행중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법무부장관이 위원회 회의 소집권 보유
뉴질랜드	위원회가 작성하여 예산청으로 송부, 예산청이 의회에 예산안 제출	총독이 칙령에 의하여 규칙 제정	인권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관련 법안이나 국제인권규범 준수를 위한 조치 등 인권관련 사항에 대하여 수상에게 수시 보고 법무부장관이 요청한 인권 및 자유에 관한 연구 보고 법무부장관이 위원장 권한 대리자 지명
남아프리카공화국	위원회가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	대통령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규칙 제정	인권위원장, 사무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시 수시로 대통령 및 의회와 협의 법안이 국제인권법 등에 위반될 경우 입법부에 보고
캐나다	위원회가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가 업무처리 규칙 제정 예산관련 규칙은 재무부의 승인 요함 	인권위원장	법무부장관이 최후한 인권관련 연구 수행·보고
인도	정부가 예산편성, 보조금 형식으로 교부	정부가 규칙을 제정하여 의회에 제출, 의회가 변경이나 폐지 가능		
필리핀	위원회가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	위원회가 운영지침 및 절차규칙 제정, 이를 위반하면 법정모독죄 적용	인권위원장	행정부처와 정부기관 등에 인권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한 지원 요청
인도네시아	내무부 예산으로 편성		사무총장(위원 중에서 선출된 상임직)	

표 5) 국내의 사례

기구	예산권	규칙제정권	직원인사권	국가기구와의 관계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통화신용정책 관련 예산을 제외한 경비예산은 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요함 경비예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p>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p>	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재의 국무회의 출석발언권 물가안정목표를 포함한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과 환율정책 등에 대하여 정부와 협의 통화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작성과 경제에 관한 조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기관, 법인,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음
금융통화위원회		<p>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직무수행 규정은 자체적으로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감위의 통화신용정책 관련 조치에 대해 제외요구권 보유 재정부장관은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되는 금통위의 결에 대해 제외요구 재정부차관은 금통위 회의에 열석하여 발언 정부는 금융통화에 관한 정책 수립시 금통위의 의견을 들어야 함 재정부장관과 금통위 및 금감위는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상호 협조
금융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원: 정부의 출연금, 한국은행의 출연금, 금융감독원검사대상기관의 출연금과 분담금 등 예산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요함 	<p>규칙의 제정·변경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요함</p>	원장	<p>금감위와의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에 대한 지시·감독을 받음 -금융감독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업무·재산·회계관련 사항 보고나 관련 물건에 대한 피검 -금감원이 내린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나 집행정지를 당함
한국소비자보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예산은 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요함 	<p>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은 재정부장관의 승인이나 인가를 요함</p>		<p>재정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음</p>

기구	예산권	규칙제정권	인사권	국가기구와의 관계
금융감독위원회		<p>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금감위 규칙으로 정함</p>		<p>재정부와의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부장관은 금융감독관련 법령의 제·개정시 금감위와 협의하여야 함 -정책수행을 위한 상호자료협조
공정거래위원회	<p>예산회계법상 중앙관서의 장으로, 기획예산처에 직접 예산요구서 제출</p>	<p>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함</p>		<p>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적인 법령·규칙 등의 제·개정이나 승인 등의 처분시 미리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함
감사원	<p>예산회계법상 독립기관, 감사원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함</p>	<p>감사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총장(정무직), 사무차장(별정직) 및 4급이상은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5급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6급이하의 원장이 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결산 및 회계검사, 직무감찰 실시 회계관계법령등에 대한 의견표시 국가의 각 기관은 회계관계 법령, 감사원의 권한에 관한 법령, 자체감사업무에 대한 법령의 제정이나 개폐시 미리 감사원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함
방송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회계법상 중앙관서의 장,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회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할 경우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예산은 '방송발전기금'에서 조달하고, 4인의 상임위원 인건비는 국가예산으로 충당 	<p>사무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함</p>	<p>위원장</p> <p>다만, 사무총장 임명은 위원회의 동의를 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영상정책 관련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방송기술 및 시설 관련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 방송프로그램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확립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위원장의 국회 출석 답변 위원장은 국무회의 출석 발언과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 건의

3. 직무의 공정성과 책임성

(1) 위원 및 직원의 의무

■ 외국의 입법례

○ 호주

- 개인정보의 비공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타인에 관한 정보의 누설이나 이용, 타인에 관한 정보나 서류를 법원에 제공하는 행위 금지
- 상근위원은 장관 승인없이 위원직 외에 보수를 받는 직에 종사할 수 없음.

○ 뉴질랜드

- 공무원 의제
담당관 및 직원은 1961년 범죄법의 목적상 공무원으로 간주

○ 캐나다

- 비밀누설 금지사항
 - 국제관계, 국가의 방위, 국가안전 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관계에 피해를 야기하는 사안
 - 캐나다 추밀원에 관한 비밀
 - 정부 조사기관이 국가안보, 일반적인 범죄의 추적이나 억제에 관련한 조사의 과정, 의회법을 위반한 특정범죄의 조사과정 등에 대하여 취득한 정보
 - 의회법을 위반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개인에 관한 사안
 - 법원과 청문기관 등의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사안
 - 정부활동의 문제에 관하여, 변호사와 고객간의 대화나 정부부처 등에 제공된 법적 의견이나 조언
 - 진정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모든 정보는 비밀이며, 그 정보 제

공자의 동의없이 공개 불가

○ 인도

- 위원장과 위원은 임기 종료 후 다른 공직 취임 금지
- 임기중 보수를 받는 다른 직에 종사 금지
- 공무원 의제
위원 등은 형법 제21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간주

○ 필리핀

- 다른 공직 겸직 금지
-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사업 경영에 관여할 수 없음.
- 정부와 정부 소유기업 또는 그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특권을 인정받는 등 재정적인 관계 금지

■ 국내의 사례

○ 금융통화위원회

- 정치활동의 금지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음.
- 재직중 다음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경영 금지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
 - 기타 보수를 받는 직
-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간주

○ 한국소비자보호원

-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임·직원, 조정위원회 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봄.

○ 금융감독위원회

- 정치활동의 금지
임명직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음.
- 겸직 등의 금지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재직중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
 - 감독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
 - 기타 보수를 받는 직
- 별칭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별칭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봄.

○ 방송위원회

- 별칭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방송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처의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와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별칭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봄.

○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음.
- 비밀엄수의 의무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됨(금융거래정보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별칭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별칭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봄.

○ 감사원

- 겸직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재직중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금지
 -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 행정부서의 공무원의 직
 -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
 - 기타 보수를 받는 직
- 정치운동의 금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음.
- 벌칙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법무부안과 공대위안

	법무부안	공대위안
비밀누설의 금지	· 위원회의 위원·조정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업무처리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	인권위원 또는 인권위원이었던 사람,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 등, 전문가, 감정인 또는 그밖의 사람은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아니됨.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3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간주	

■ 소결

- 인권위원회 위원 및 소속 직원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일한다는 높은 사명감과 도덕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함.
특히 인권위원회가 독립규제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구가 되는 경우 그 의사결정의 책임이 위원회 자신에게 귀속되므로 더욱 직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요구됨⁴³⁾.
- 따라서 위원과 직원이,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제약당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업무와 도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엄격한 의무조항을 부과하여야 함.
업무처리중 지득한 비밀의 누설금지 및 업무목적외 이용금지 의무와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벌칙조항 등을 규정하여야 함.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와 위원회의 위촉 또는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함.
또한 상임위원의 경우, 재직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행정부서의 공무원의 직, 기타 보수를 받는 직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⁴⁴⁾
- 인권위원회는 여타의 헌법기관이나 정부기관과는 달리 그 기구의 성격 자체가 정부는 물론 이해집단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큰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과 소속직원은 정당·경제집단·노동조합 등 특정 이해단체의 간섭을 벗어난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함.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에 의거 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이 금지되어 있는 바, 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과 직원도 이에 상응하는 복무 의무 요구된다 할 것임.

43) 반면에 합의제 행정기관(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은 그 의사결정이 궁극적으로 행정수반 및 국무총리 또는 소속장관의 지휘를 받게 되고 의사결정의 책임 또한 행정부처에 귀속됨. (임병수, 앞의 책)

44) 위원의 겸직금지 의무는 감사원 감사위원의 경우와 같이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함.

(2) 다른 국가기구에 대한 책임

■ UN의 지침

- 파리원칙
인권기구는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의견, 권고, 제안 및 보고 등을 정부, 의회 및 다른 적당한 기관에 제출할 책임이 있음.
- UN핸드북
 - 인권기구는 그 기구의 설립법률에 따라서 법적·재정적으로 정부와 의회에 항상 책임을 지며, 일반적으로 보고의무를 통하여 이러한 책임을 이행함.
 - 인권기구는 그 활동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의회 또는 유사한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인권기구설립법은 보고횟수, 특별보고서 제출, 수시 특별보고서 제출, 보고사항, 보고서의 검토절차 등 보고요건을 상세히 규정해야 함.
 - 인권기구의 권고, 보고 또는 결정은 설립법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당국 또는 단체가 재심사할 수 없음.

■ 외국의 입법례

- 호주
연례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이를 상·하 양원에 제출
- 뉴질랜드
연례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하원에 제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연례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상·하 양원에 이를 상정하며, 분기별 보고서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서 제출

- 회계감사원의 감사를 받음.

○ 캐나다

연례보고서와 필요할 경우 특별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상·하 양원에 제출

○ 인도

- 연례보고서와 필요한 경우 특별보고서를 중앙정부 및 주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의회와 주의회에 제출
- 회계감사원의 감사를 받음.

■ 법무부안과 공대위안

	법무부안	공대위안
국가기구에 대한 보고의무	대통령과 국회에 전년도 활동상황에 관한 연례보고서와 필요한 경우 특별보고서를 작성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함.	대통령과 국회에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보고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공개하여야 함.
감사원 감사	-	회계감사는 받고, 직무감찰은 배제

■ 쟁점사항

공대위는, 법무부안이 인권위원회가 대통령과 국회에 “전년도 활동상황”에 관한 연례보고서만 작성하게 하고 이를 종합하여 인권상황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수립·보고할 권한을 인권위원회로부터 박탈하는 것은 인권기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

■ 소결

○ 인권위원회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를 전년도 ‘활동보고서’로 국한시키지 않고, 매년 국가의 인권상황 전반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인권개선 대책을 제안하는 ‘인권보고서’로 작성·보고·공표하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 설립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됨.

○ 인권위원회가 국가예산으로 운영되고 국가공무원으로 이루어지는 국가기구인 한, 마땅히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⁴⁵⁾의 대상이 되도록 함.

또한 국회 국정감사를 받고 위원장은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답변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통제를 받음.

45) 이에 대하여 공대위는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 및 소속직원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함.

그러나 감사원법 제24조가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을 직무감찰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에 근거한 것이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독립적 지위를 가진 감사원으로부터 직무감찰을 받는다고 하여 인권위원회가 반드시 직무의 독립성을 침해받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따라서 국가공무원인 인권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는 것이 마땅함.

표 6) 외국의 입법례

국가	위원의 제척사유	위원의 의무	보고 의무	감사기관의 감사
호주	위원회가 심의중이거나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위원은 그 문제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나 결정에 관여해서는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의 비공개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 서 지득한 타인에 관한 정보의 누설이나 이용, 타인에 관한 정보나 서류를 법원에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상근위원은 보수를 받는 다른 직 겸직 금지 	연례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이를 상·하 양원에 제출	
뉴질랜드	프라이버시 담당관의 회피 -프라이버시 담당관이 그 기능이나 직무와 저촉되거나, 담당관이 법관인 경우 사법 직무와 저촉한다고 보는 경우 위원회의 참여를 거절하거나 철회 가능	공무원 의제 -담당관 및 직원은 1961년 범죄법의 목적상 공무원으로 간주	연례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이를 하원에 제출	
남아프리카 공화국	조사대상인 사안에 관하여 재산적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하고 적절한 직무수행에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그 조사에 관여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례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상·하 양원에 상정 대통령과 의회에 분기별 보고서와 필요시 언제든지 보고서 제출 	회계감사원의 감사를 받음
캐나다		비밀누설 금지사항 -국제관계, 국가의 방위, 국가안전 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관계에 피해를 야기하는 사안 -캐나다 추밀원에 관한 비밀 -정부 조사기관이 국가안보, 일반적인 범죄나 의회법을 위반한 특정범죄의 조사과정 등에 대하여 취득한 정보 -의회법위반범죄와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개인에 관한 사안 -정부활동의 문제에 관하여, 변호사와 고객간의 대화나 정부부처등에 제공된 법적의견이나 조언 -진정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모든 정보	연례보고서와 필요시 특별 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상·하 양원에 제출	

국가	위원의 제척사유	위원의 의무	보고 의무	감사기관의 감사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기중 보수를 받는 다른 직에 종사 금지 위원장과 위원은 임기 종료후 다른 공직 취임 금지 공무원 의제 위원 등은 형법 제21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간주 	연례보고서와 필요시 특별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의회에 제출	회계감사원의 감사를 받음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공직 금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사업 경영에 관여할 수 없음 정부와 정부 소유기업 또는 그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특권을 인정받는 등 재정적인 관계 금지 		

표 7) 국내의 사례

기구	위원의 제척사유	위원의 의무	보고 의무	감사기관의 감사
금융통화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활동의 금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음 겸직 등의 금지 재직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금하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기타 보수를 받는 직 등의 직을 겸할 수 없음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금융감독원	<p>대표권의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장의 이익과 금융감독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금감위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금감위 위원이 금감원을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겸직의 제한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당해 임명권자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함 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검사·감독 대상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에게 대출을 강요하거나 금품 기타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됨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벌칙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한국소비자보호원	<p>소비자분쟁조정위원의 제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p>매년 업무계획서, 예산서,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를 재정부장관에게 작성 보고</p>	

기구	위원의 제척사유	위원의 의무	보고 의무	감사기관의 감사
한국소비자보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활동의 금지 임명직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음 겸직 등의 금지 재직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감독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기타 보수를 받는 직 등은 겸할 수 없음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정거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사건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운동 금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음 비밀업수의 의무 직무상 알게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됨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기구	위원의 제척사유	위원의 의무	보고 의무	감사기관의 감사
감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의 제척 - 자기와 관계있는 사항 - 친족·호주·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람 - 당해 안건에 관계있는 자의 중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 임명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참여한 사항 -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았거나 형사재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그 탄핵의 결정 또는 재판의 확정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 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등의 금지 재직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금지하며,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행정부서의 공무원의 직·감사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기타 보수를 받는 직을 겸할 수 없음 • 정치운동의 금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참여할 수 없음 • 비밀준수의무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의 용도로 이를 이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방송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여 금지 -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IV. 조사 및 구제권의 실효성

1. 효율적인 조사권

(1) 조사의 대상과 한계

■ UN의 지침

○ 파리원칙

- 인권기구는 인권기구의 구성원이나 청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권한에 속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그 문제가 정부가 제기한 것이든 혹은 인권기구가 상급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직접 처리하기로 한 것이든 관계없이, 이를 자유롭게 검토함.
- 그 권한에 속하는 상황을 판단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조사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와 서류를 확보함.

○ UN핸드북

- 조사대상

진정대상은 특정 실체나 실체의 집단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정부에 대한 진정 뿐 아니라 개인, 공기업이나 사기업 또는 단체가 될 수 있음.

진정내용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호하는 권리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거나 당해 국가가 가입한 국제협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조사대상으로 규정할 수도 있음.

- 조사의 제한

일반적으로 의회나 사법부의 구성원에 대한 진정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지 않고, 공공행정분야의 공정성과 합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설립된 인권기구는 사적 단체나 개인의 행위에 대한 진정을 조사할 권한이 없음.

이미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문제를 다시 조사할 수 없음. 즉, 인권기구와 다른 기관사이에 관할권의 충돌가능성이 있는 분야 - 예컨대 당해

사안이 이미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경우 - 는 인권기구의 권한범위에서 배제함.

많은 인권기구가 단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위반에 대한 진정만을 조사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국내인권기구의 업무부담을 고려한 때문일 수도 있지만, 국제법의 원칙상 인권은 동등하고 불가분의 것이므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도 진정과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됨.

- 진정의 각하

인권기구는 진정이 관할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지극히 사소한 것이거나,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진정내용이 진정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기간제한을 위반한 경우 각하할 수 있음.

■ 외국의 입법례

○ 호주

- 조사대상

· 인권침해행위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및 이와 관련된 선언, 규범 등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차별행위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민족적 혈통, 사회적 출신을 이유로 특정인을 구분, 배척, 우대함으로써 고용과 취업에서 균등한 기회와 처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 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의 인권침해행위 조사권 보유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에 관하여 ombudsman과 인권위원회 양측에 진정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협약에 의한 이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

- 각하사유

· 조사대상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거나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을 때

· 진정이 행위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서 제기되었을 때

- 내용이 극히 사소한 것이거나 진정권의 남용으로 인정되는 때
- 기회 타 기관이나 위원회의 구체절차를 종료한 사안에 관한 것인 때
- 다른 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때
- 정보기관, 국가안보 관련기관의 행위에 관한 진정은 조사하지 않고 정보부 감사관에게 이첩
- 제출요구 금지대상
 - 국가안보나 국제관계를 해하는 경우
 - 연방장관과 주정부의 관계에 손상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연방장관과 주장관 간의 교섭내용
 - 내각이나 내각위원회의 심의내용이나 자문내용을 공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행정지문위원회의 지문내용을 공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진행중인 범죄수사나 공정한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범죄수사와 관련된 정보원의 존재 및 신원이 누설될 위험이 있는 경우
 - 형법 집행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수사관행 및 기법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뉴질랜드

- 조사대상

· 차별행위

고용,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 토지·주거 및 숙박시설 등 주거시설의 구입 내지 이용, 직업훈련기관 및 교육시설의 이용, 보험거래, 성희롱, 인종학대 등에 있어서 차별사유⁴⁶⁾에 기한 행위

· 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의 시정 및 예방업무를 주요업무로 하고, 경찰·교도관 등 법집행공무원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권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

공공기관 및 공무원이 행한 결정, 권고, 작위, 부작위 등(교도소, 병

46) 차별사유에는 인종, 성별(임신, 출산 포함), 출신국가 또는 출신민족, 피부색, 종교적 신념, 윤리적 신념, 연령, 동성애등 성적 경향, 혼인 여부, 가족 상황(자녀의 다과등), 장애, 정치적 견해, 고용상황등이 해당

원등 집단수용시설의 책임자의 위법행위 포함)은 음부즈만이 조사하여 시정 권고

- 각하사유

- 진정인이 진정하기 12개월 이전에 진정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 진정의 본안이 사소하거나 진정의 남용인 경우
 - 진정인이 진정을 철회한 경우
 - 의회에 대한 청원, 음부즈만에게 진정할 권리 이외에 진정인에게 충분한 구제수단이나 상소권이 있는 경우
- 제출요구 금지대상
- 국가의 안전, 방위, 국제적 관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경우
 - 범죄의 방지나 수사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비밀사항과 관련한 내각 또는 내각위원회의 절차의 공개가 공공이익에 해로울 경우

○ 남아프리카공화국

- 조사대상 : 기본권 침해행위 전반

○ 캐나다

- 조사대상

· 차별행위

고용,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 성희롱, 재화·용역·아파트 등 주거 시설이나 상업시설의 구입 내지 이용 등에 있어서 차별사유⁴⁷⁾에 기한 행위. 동등한 가치를 갖는 업무를 수행하는 남녀 피고용자간의 임금에 차이를 두는 것도 포함

· 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의 시정 및 예방업무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고, 경찰·교도관 등 법집행 공무원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행정기관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음부즈만이 조사 및 시정 권고

- 각하사유

· 피해자가 다른 항의나 재심절차를 아직 완전히 마치지 아니한 경우

47) 차별사유는 인종, 성별(임신, 출산 포함), 출신국가 또는 출신민족, 피부색, 종교, 연령, 동성애 등 성적 경향, 혼인 여부, 가족의 상황(자녀의 과다 등), 장애, 이미 사면된 유죄판결 등이 해당됨.

· 의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완전하게 해결가능한 경우

· 인권위원회 관할이 아닌 경우

· 사소하거나 남소인 경우

· 진정의 기초사실이 1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경우

· 차별행위의 피해자 이외의 자가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진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진정 제기 이후부터 진정에 대한 인권심판소의 심리 개시 이전까지 장관으로부터 국가안보와 관련된 진정이라는 소명이 있을 경우, 그 진정을 각하하거나 “캐나다 국방정보법”에 의하여 설치된 재심위원회에 회부

○ 인도

- 조사대상 : 인권침해행위 전반

-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주 인권위원회나 다른 위원회가 이미 조사중인 사항

· 조사대상행위가 발생한지 1년이 경과한 경우

- 군대의 구성원이 제기한 진정은 정부 보고에 대한 검토 후 조사하지 않을 수 있음.

○ 필리핀

- 조사대상 :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인권침해행위

○ 인도네시아

- 조사대상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 뿐만 아니라 철거민에 대한 적정보상 및 이주대책, 근로자의 휴일수당 인상문제, 수용토지에 대한 적절보상 요구 등 노동, 주택, 토지, 종교분야에서의 법위반행위도 조사

■ 법무부안과 공대위안

	법무부안	공대위안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의 직원이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상의 기본권 조항(제10조 내지 제22조, 제24조 내지 제28조) 또는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차별행위 차별사유에 기하여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거주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등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인종모욕, 성희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기본적 권리(제10조 내지 제22조, 제24조 내지 제28조) 또는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정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평등권을 침해당한 경우 차별행위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사면되거나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병력 또는 달리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굴욕감이나 그밖에 정신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 다수인보호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각하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경우. 다만,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의결한 경우는 제외 진정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정의 내용이 그 자체로 명백히 위증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익명으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정의 내용이 그 자체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진정에 관하여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다만,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외

	법무부안	공대위안
각하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가 아닌 자의 진정에 관하여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진정의 취지가 당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수사, 재판, 행정심판, 국회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헌법소원, 감사원의 감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 여성특별위원회의 남녀차별사항 조사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기관에서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진정이 제기될 당시 국회의 국정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계속중이거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의 제한	<p>위원회의 조사는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류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됨.</p>	
조사의 한계	<p>i)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인 경우, ii) 수사·재판·형인 경우에 한하여 관련 중앙관서의 집행에 관한 자료나 물건으로서 공개하면 범죄수사나 계류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국가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등의 제출이나 검증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음.</p>	<p>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인 경우에 한하여 관련 중앙관서의 집행에 관한 자료나 물건으로서 공개하면 범죄수사나 계류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국가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등의 제출이나 검증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음.</p>

	법무부안	공대위안
조사의 한계	이 경우 위원회는 관련 국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조사의 중지	진정이 i) 당사자나 참고인의 소개불 명 또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ii) 진정에 대 한 조사를 개시한 후 그 진정의 원 인이 된 사실과 동일한 사안에 관하 여 수사, 재판, 행정심판, 국회의 국 정감사나 국정조사,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헌법소원, 감사원의 감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조 사, 여성특별위원회의 남녀차별사항 조사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서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 사가 중지될 수 있음.	진정이 제기된 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경우, 위원회는 피해자 또는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검찰총장 또는 그 수사기관의 장에 게 수사의 중지 또는 보류 요청 가 능
진정의 기각	· 사실이 아닌 경우 ·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 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 니한 경우	·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 진정의 내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경우 · 진정에 대하여 이미 피해회복이 이 루어져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 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쟁점사항

조사대상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하여

- 공대위는 법무부안이 '조사의 제한' 조항을 두어 조사대상 기관이 이를 근거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비판
- 법무부안이 '조사의 한계' 조항에 수사·재판·형집행에 관한 자료나 물건으로서 공개하면 범죄수사나 계류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은 조사대상기관에 광범위한 조사거부권을 부여

하고 있다고 비판

- 법무부안의 '조사의 중지' 조항에 따르면, 일단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나중에 각하사유가 생기면 진정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위원회의 조사를 봉쇄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인권침해행위는 기본적으로 범죄행위이므로 수사기관은 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는 동안 증거가 인멸·은폐·왜곡될 가능성이 높고, 위원회의 조사시효 1년을 초과할 가능성도 높아 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 초래

○ 법무부의 입장

- 조사의 제한사유를 규정한 것은 공익적 필요상 불가피하며, 자료제출이나 실지조사를 거부한 국가기관에 대하여는 사실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보완이 가능함.
-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국가안보를 해하거나 진행중인 범죄수사 또는 공정한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자료제출요구 거부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공대위의 입장

- 법무부안의 '조사의 제한' 조항은 삭제함.
- '조사의 한계' 조항에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인 경우에 한하여 관련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유를 소명할 때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조사의 중지' 조항과 관련하여 진정이 제기된 후 그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경우, 위원회가 검찰총장 또는 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중지나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소결

- 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는 당사자 사이의 화해를 통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시도하고 권고·조정·법률구조 등의 비강제적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신속하며 저렴한” 구제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를 밝혀내어 혐의자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그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름.

- 법무부안은 인권위원회가 헌법상 모든 자유권 및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국제규약상의 권리침해와 모든 차별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공무원과 모든 사인간의 인권침해도 다룰 수 있게 함으로써 조사대상에 있어서는 공대위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임.
-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자료제출요구 금지대상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고, 캐나다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진정을, 인도는 군인이 제기한 진정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국가기밀사항이나 “오로지 계류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명할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사실조회에 대해 회답할 의무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수사기관 또는 재판기관이나 그를 보조하는 자의 행위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제기된 진정에 대해서는 조사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됨. 이 경우 인권위원회는 비밀누설 금지와 수사방해금지의무 등의 주의적 의무 규정을 엄격하게 부과하여야 함.
- 공대위는 인권위원회에 먼저 제기된 진정에 대해 인권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후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한 경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의 중지 또는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인권침해의 방임을 방지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시도하기 위한 인권위원회의 조사와 인권침해범죄의 혐의를 규명하여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경합하여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 둘을 조

화시키기는 극히 어려운 문제로서 결국 두 기관의 협의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8) 외국의 입법례

국가	조사대상	각하사유	조사 또는 제출요구 금지대상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행위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재규약' 및 이와 관련된 선언, 규범 등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차별행위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민족적 혈통, 사회적 출신을 이유로 특정인을 구분, 배척, 우대함으로써 고용과 취업에서 균등한 기회와 처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 공무원의 인권침해행위 조사권 보유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에 관하여 ombudsman과 인권위원회 양측에 진정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협조에 의한 이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거나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을 때 • 진정이 행위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서 제기되었을 때 • 내용이 극히 사소한 것이거나 진정권의 남용으로 인정되는 때 • 기러 타 기관이나 위원회의 구체적 절차를 종료한 사안에 관한 것인 때 • 다른 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기관, 국가안보 관련기관의 행위에 관한 진정은 조사하지 않고 정보부 감사관에게 이첩 • 제출요구 금지대상(검찰총장이 위원회에 확인서 제출) -국가안보나 국제관계를 해하는 경우 -연방정관과 주정부의 관계에 손상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연방정관과 주장관 간의 교섭 내용 -내각이나 내각위원회의 심의 내용이나 자문내용 -행정지문위원회의 자문내용 -범죄수사나 공정한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수사와 관련된 정보원의 존재 및 신원이 누설될 위험이 있는 경우 -형법 집행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수사관행 및 기법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행위 고용,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 토지·주거 및 숙박시설 등 주거시설의 구입 내지 이용, 직업훈련기관 및 교육시설의 이용, 보험거래, 성희롱, 인종학대 등에 있어서 차별사유에 기한 행위 • 차별행위의 시정 및 예방업무를 주요업무로 하고, 공무원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권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 공공기관 및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ombudsman이 조사하여 시정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정인이 진정하기 12개월 이전에 진정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 진정의 본안이 사소하거나 진정의 남용인 경우 • 진정인이 진정을 철회한 경우 • 의회에 대한 청원, ombudsman에게 진정할 권리 이외에 진정인에게 충분한 구제수단이나 상소권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안전, 방위, 국제적 관계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 범죄의 방지나 수사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비밀사항과 관련한 내각 또는 내각위원회의 절차의 공개가 공공이익에 해로운 것이라고 검찰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국가	조사대상	각하사유	조사 또는 제출요구 금지대상
남아프리카공화국	기본권 침해행위 전반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행위 고용,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 성희롱, 재화·용역·아파트 등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의 구입 내지 이용 등에 있어서 차별사유에 기한 행위. 동등한 가치를 갖는 업무를 수행하는 남녀 피고용자간의 임금에 차이를 두는 것도 포함 • 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의 시정 및 예방업무를 주요업무로 하고, 경찰·교도소 등 법집행 공무원의 고문 등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행정기관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ombudsman이 조사 및 시정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가 다른 항의나 제심절차를 아직 완전히 마치지 아니한 경우 • 의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완전하게 해결가능한 경우 • 인권위원회 관할이 아닌 경우 • 사소하거나 남소인 경우 • 진정의 기초사실이 1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경우 • 피해자 이외의 자가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진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진정 제기후부터 진정에 대한 인권심판소의 심리 개시 이전까지 장관으로부터 국가안보와 관련된 진정이라는 소명이 있을 경우, 그 진정을 각하하거나 "캐나다 국방정보법"에 의하여 설치된 제심위원회에 회부
인도	인권침해행위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인권위원회나 다른 위원회가 기러 조사중인 사항 • 조사대상행위가 발생한지 1년이 경과한 경우 	군대의 구성원이 제기한 진정은 정부 보고에 대한 검토 후 조사하지 않을 수 있음
필리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인권침해행위		
인도네시아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 뿐만 아니라 철거민에 대한 적정 보상 및 이주대책, 근로자의 휴일수당 인상문제, 수용토지에 대한 적절보상 요구 등 노동, 주택, 토지, 종교분야에서의 범위반행위도 조사		

(2) 조사의 방법과 절차

■ UN핸드북

- 정부기관의 협력을 강제하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아 진정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공공당국이 정보 요청에 응하고 조사에 조력하도록 해야 함.
- 인권기구의 권한은 집행될 수 있어야 하며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함. 자유로운 권한행사가 방해받을 경우에, 법적 또는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고, 인권기구가 조사를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개인이나 기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중요함.
- 인권위원회의 조사권
 - ① 진정내용을 피진정인이나 피진정단체에 통지하여 이에 대하여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 ② 조사기관이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문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
 - ③ 서면 또는 구두로 관련정보의 제공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
 - ④ 필요할 경우 교도소, 수감시설 등에 대한 방문권을 포함하여 현장조사를 행할 수 있는 권한
 - ⑤ 모든 당사자를 심문하기 위하여 소환할 수 있는 권한
 - ⑥ 증언을 하거나 목격자로 진술한 자에게 기소면제특권을 부여할 권한
 - ⑦ 조사대상 행위에 관하여 조사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조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개인(전문가 및 행정기관의 대표, 그리고 적당하다면 사적 실체들을 포함)의 진술을 듣고 심문할 수 있는 권한
 - ⑧ 조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을 소환하고 출석을 강제하며, 선서하게 한 후에 구두나 문서로 증거를 제출하게 하고, 행정기관에 관련서류를 비롯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강제할 권한

■ 외국의 입법례

○ 호주

- 조사 방법

- 개인이나 법인에 대하여 조사관련 정보와 서류의 제출 요구
- 관계인 출석요구 및 조사
- 출석한 관계인에게 선서하게 하고 진술 요구

- 벌칙

- 정당한 사유없이 이루어지는 자료제출 거부, 선서 거부, 출석 거부, 답변 거부, 조사활동 방해 등에 대해 벌금으로 처벌
- 허위자료 제출, 조사협조자에 대한 고용관계 등에서의 불이익 부과행위는 벌금이나 단기자유형으로 처벌

○ 뉴질랜드

- 조사방법

진정조사국은 관련자에게 증거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자를 소환하여 선서하에 신문할 수 있음.

- 진정심판소⁴⁸⁾(Complaint Review Tribunal)에 의한 심리

- 심판담당관이 심판소에 심판을 제기하거나(직권조사의 경우), 진정조사국이 기각한 진정에 대해 진정인 또는 피해자가 심판을 제기한 경우 심리 개시
- 심판소는 증거제출명령 부과, 증인소환 가능
-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아니한 것도 증거로 인정
- 심판담당관은 심판소의 심판에 담당관 또는 변호사로 출석하여 증거제출권 및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 행사

- 고등법원에의 항소

- 심판소의 가치분결정, 기각결정, 구제조치 부여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고등법원에 항소
- 고등법원은 항소된 명령, 결정에 대하여 확인, 수정, 파기
- 고등법원에서 항소에 대하여 결정하지 않고 심판소에 환송하여 심리토록 결정 가능

- 항소법원에의 항소

- 고등법원의 법률문제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법원에 항소

48) 진정심판소는 인권위원회와는 독립된 일종의 특별법원. 총독이 임명한 심판소장과 심판위원으로 구성된 심판위원단 중에서 심판소장이 임명한 심판위원으로 구성

- 항소법원은 고등법원과 동일한 재판권한 보유
- 항소법원의 결정은 최종심

- 벌칙

- 위원회의 권한 행사 방해, 위원회의 요구 기절, 허위진술 등에 대해 벌금형
- 심판소의 증언명령 및 증거제출명령 위반, 위원회등의 권한행사 방해죄 등은 벌금형
- 심판소 모욕죄(심판소 위원 및 직원에 대한 협박과 모욕, 심판절차 방해, 심판소장 명령 지시 위반)는 구류 또는 벌금형

○ 남아프리카공화국

- 조사방법

- 출석요구 및 신문
- 위원, 직원, 위원이 지명한 경찰관은 판사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강제조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관련자에게 증거제출명령 부과

- 벌칙

- 위원회의 요구에 대한 선서거부, 질문에 대한 답변 거부, 허위증언, 위원회 직무수행이나 조사 방해, 모독,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거부 등에 대해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

○ 캐나다

- 조사 방법

- 당사자 소환 조사
- 문서 제출 요구
- 필요한 경우 연방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증거 확보
- 압수수색시 필요한 경우 경찰관 대동

- 인권위원회는 조사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진정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인권심판소(Human Rights Tribunal)에 회부하고, 관할이 없거나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관계당국에 회부 또는 기각

- 인권심판소⁴⁹⁾는 인권위원회가 회부한 진정에 대하여 심리절차 개시

- 진정인 등 양 당사자가 심판소에 출석하여 증거 제출하고 변론할 기회 부여

- 증거채택에 있어서 법원보다 덜 엄격

- 재심심판소는 인권심판소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이 있는 자의 항고에 따라 심리절차 개시

- 인권심판소의 기록과 당사자의 제출서류 중심으로 심리
-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 및 증언 실시

- 벌칙

인권위원회, 인권심판소 또는 조사관의 직무수행이나 활동을 방해하는 자, 진정인 또는 증인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검찰총장의 동의 필요)

○ 인도

- 조사 방법 및 절차

- 증인소환과 출석강제 및 증인에 대한 선서의무 부과
- 진정인, 피진정인 및 관계공무원 등 관계자 소환조사
- 관계인 및 행정기관 등에 자료제출 요구
- 관련자료 압수수색권 보유
- 총경급 이상의 경찰관을 책임자로 하는 특별수사반을 설치하여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

- 인권법원

- 인권침해범죄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주정부가 고등법원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지방법원의 민사상급법원을 인권침해범죄 재판을 전담하는 인권법원으로 지정
- 주정부가 임명한 특별검사가 인권법원에서 소송 수행

○ 필리핀

- 조사 방법과 절차

- 진정 당사자에게 선서진술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한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고 변호사가 반장인 조사반이 사무소에서 조사 진행

49) 인권심판소와 재심심판소는 인권위원회로부터 독립된 일종의 특별법원. 총독이 임명한 단장과 심판위원들로 이루어진 인권심판위원단에서 위원장이 지명하여 심판위원 구성

위원회 직권조사인 경우나 긴박한 경우에는 소명자료 첨부요구 없이 즉시 현장조사

- 진정에 대해 지역사무소에서 먼저 조사여부 결정 후 조사에 착수
- 지역사무소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 법원의 재판에 회부할 필요가 있는 사안은 검찰총장에게 이송하고, 직접 법원의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 법원에 이송

- 벌칙

위원회 운영지침 및 절차규칙 위반행위에 법정모독죄 적용

■ 국내의 사례

○ 한국소비자보호원

- 검사와 자료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제품제조공정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당해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물품·서류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소비자보호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등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요청 가능하고 사업자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함.

- 벌칙

공무원의 검사에 대한 거부·방해, 기피 및 허위자료제출에 대해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 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

-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 실지조사 및 관계인 진술청취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기타의 자료나 물건 조사

·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 청취

·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 금융거래정보 제출요구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 위반혐의가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고,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제공하여야 함.

-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자료 제출 가능

- 벌칙

· 허위의 감정을 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 과태료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거부한 자

○ 감사원

- 계산서등의 제출
감사를 받는 자는 계산서·증거서류·조서 기타의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함.
- 서면감사·실지감사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상시 서면감사를 하는 외에 필요한 때에는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감사
- 출석답변·서면제출·봉인등
 -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
 - 증명서·변명서 기타 관계문부·물품등의 제출 요구
 - 창고·금고·문부·물품등의 봉인
 -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함.
-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답변 요구
- 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 ▷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 ▷ 감사를 방해한 자
 - ▷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답변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한 자

■ 법무부안과 공대위안

	법무부안	공대위안
조사방법	· 진정인·참고인 또는 피진정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 진정인·참고인 또는 피진정인의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 피진정인이 소속된 소속 기관·단체등에 대한 관계자료나 물건의 제출	· 당사자,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와 진술청취 · 당사자, 관계인,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와 제출된 자료 등의 영치 · 조사사항과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법무부안	공대위안
조사방법	· 출요구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사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기타 필요한 장소에서 관계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 영치	·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검증 또는 감정 · 당사자, 관계인,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신문 · 관련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자료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하여 검증 또는 감정
진정의 이송	다른 국가기관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정을 그 기관에 이송	·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지체없이 그 진정을 다른 국가기관에 이송 · 진정이 제기될 당시 국회의 국정조사나 감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기관에 이송
수사기관의 협조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와 필요한 조치 의뢰 · 진정이 제기된 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경우, 피해자 또는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검찰총장 또는 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중지 또는 보류 요청

	법무부안	공대위안
질문 검사권		필요한 자료 등의 소재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옹호방해업무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위계로써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 허위진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진정서 작성 등 방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시찰·조사 거부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정서의 작성·제출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사람 ▷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사람 ▷허위의 증언을 하거나 허위의 감정을 한 사람 · 다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정서의 작성사실 및 그 내용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 ▷허위의 자료 등을 제출한 사람 · 다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석요구나 제출요구에 불응한 사람 ▷위원회의 질문에 허위의 답변을 한 사람 · 허위진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논함. · 다음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가 정한 구금시설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에서 이행해야 할 조치를 위반한 사람 ▷위원회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사람

■ 쟁점사항

인권위원회가 압수·수색 등의 강제조사권을 보유하는 문제에 대하여

○ 법무부의 입장

- 압수·수색등은 범죄수사를 전제로 한 것임.
- 인권위원회에 강제수사권을 주는 것은 헌법50)에 보장된 영장제도와 충돌함.
- 강제조사권을 인정하게 되면 인권위원회가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함.
- 뉴질랜드와 호주 등 대다수의 외국 인권위원회도 강제조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캐나다·인도·남아공의 인권위원회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것은 이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검사가 영장청구에 관여하지 않고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법체계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임.

○ 공대위의 입장

- 인권위원회 조사의 방해에 대하여 처벌이 지나치게 낮고, 허위자료제출에 대해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실효성이 떨어짐. 즉, 조사대상자의 진술이나 제출자료가 사실인지 확인할 장치가 없고, 당사자가 과태료의 납부를 감수하고서라도 조사를 거부할 경우 조사를 관철시킬 방법이 없음.
- 따라서 인권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여 혐의자나 증인을 구인하고 압수·수색할 수 있게 하거나, 출석이나 요구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신문권을 부여하고 허위증언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형사처벌

50) 헌법 제12조제3항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에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소결

- UN핸드북은 인권위원회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법적·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하고,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을 강제할 권한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함.
- 남아공·캐나다·인도의 인권위원회는 압수수색권을 보유하고 있고, 호주·뉴질랜드·남아공·캐나다·필리핀 등은 출석이나 답변거부, 허위진술, 조사방해 등에 대하여 벌금이나 단기자유형으로 처벌함.
- 국내에서는, 검사나 조사의 거부·방해·기피와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경우 당해 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징계를 요구하고, 한국 소비자보호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감사원의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
- 공대위는 인권위원회에 압수·수색 등의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현행 영장제도와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소속검사를 두어 이를 통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함.
그러나 검사는 범인과 범죄사실 등을 수사하는 수사의 주체이고, 검사가 청구하는 영장은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수사기관이 아닌 인권위원회에 소속검사를 두는 것은 '형벌 이외의 목적'으로 검사를 배치하여 '범죄수사 이외의 목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임. 이것은 검찰의 직무와 권한을 검찰청법⁵¹⁾과 형사소송법⁵²⁾ 등 현행법상 규정된 범위를 넘어서서 확장시키는 것이 됨.
따라서 수사기관이 아닌 인권위원회에 소속 검사를 두고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사제도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문제라고 할 것임.

51)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1.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4.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으로 규정하고 있음.

52) 형사소송법 제195조에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또한 "국제징수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과정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없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를 위하여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며, 법원의 판결과 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없이 압류재산을 매각할 권한"을 가지므로, "조세채권 확보 이상으로 중요한 인권침해의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를 위해 인권기구가 강제력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음⁵³⁾.

그러나 세무공무원의 압수·수색권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그 불이행에 대하여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여기서는 조세권 확보를 위한) 행정상 강제인 데 반하여 인권위원회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적용대상과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우리 헌법체계 안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임.

- 따라서 UN의 권고안과 우리의 법체계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인권위원회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감사원의 경우와 같이 조사방해,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 불응, 허위자료제출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하거나 징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⁵⁴⁾하도록 함.
- 또한 인권위원회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의 수준으로 증인과 감정인에 대해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의 증언이나 감정에 대하여 징역형 등 형사처벌하도록 함.

53) 조용환, 앞의 글, 141쪽 참조

54)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단순한 의무태만 내지 의무위반)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형벌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의 형종과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당해 위반행위가 위외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 한 그 처벌내용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그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임.(헌법재판소 1997.8.21. 선고, 93헌바51 결정 참조)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의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임.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죄질의 경중과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범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하게 된다거나, 그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법 제37조제2항으로부터 파생되는 비례의 원칙 혹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입법재량이 헌법규정이나 헌법상의 제 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 단순한 입법정책 당부의 문제에 불과하고 헌법위반의 문제는 아니라 할 것임.(헌법재판소 1990.9.3 선고, 89헌가95 결정 참조)

증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
률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도입된 동행명령제(도55)를 활용하
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⁵⁶⁾⁵⁷⁾.

- 55)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함. 동행명령장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하고,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하며, 현역 군인인 증인이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이상 제6조). 또한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국회모독죄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함(제13조).
-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의하면 출석요구를 받은 자(진정인, 참고인, 피진정인)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집행방법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과 동일하게 이루어짐(이상 제22조). 또한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제37조).
- 56) 그러나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한 소속직원의 업무부담 증가나 직원증원 등 예산상의 문제가 예상된다.
- 57) 이 밖에도 공대위는 인권위원회에 허위진정을 한 자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무부안의 형벌규정이 자칫 인권위원회의 조사기능을 무력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허위진정에 대한 형사처벌은 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표 9) 외국의 입법례

국가	조사의 개시	조사방법과 절차	벌칙
호주	진정이나 직권에 의하여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이나 법인에 대하여 조사관련 정보와 서류의 제출 요구 관계인 출석요구 및 조사 출석한 관계인에게 선서하게 하고 진술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한 사유없이 이루어지는 자료 제출 거부, 선서 거부, 출석 거부, 답변 거부, 조사활동 방해 등에 대해 벌금으로 처벌 허위자료 제출, 조사협조자에 대한 고용관계 등에서의 불이익 부과행위는 벌금이나 단기자유형으로 처벌
뉴질랜드	진정이나 직권에 의하여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정조사국은 관련자에게 증거제출 요구와 관련자 소환 신문 진정심판소(Complaint Review Tribunal)에 의한 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판담당관이 심판소에 심판을 제기하거나(직권조사의 경우), 진정조사국이 기각한 진정에 대해 진정인 또는 피해자가 심판을 제기한 경우 심리 개시 증거제출명령 부과, 증인소환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아니한 것도 증거로 인정 심판담당관은 심판소의 심판에 담당관 또는 변호사로 출석하여 증거제출권 및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 행사 고등법원에의 항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판소의 가치분결정, 기각결정, 구체조치 부여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고등법원에 항소 고등법원은 항소된 명령, 결정에 대하여 확인, 수정, 파기 고등법원에서 항소에 대하여 결정하지 않고 심판소에 환송하여 심리토록 결정 가능 항소법원에의 항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법원의 법률문제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법원에 항소 항소법원은 고등법원과 동일한 재판권한 보유 항소법원의 결정은 최종심 	
남아프리카 공화국	진정이나 직권에 의하여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석요구 및 신문 위원, 직원, 위원이 지명한 경찰관은 판사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강제조사할 수 있음 관련자에게 증거제출명령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의 요구에 대한 선서거부, 질문에 대한 답변 거부, 허위증언, 위원회 직무수행이나 조사 방해, 모독,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거부 등에 대해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

국가	조사의 개시	조사방법과 절차	벌칙
캐나다	진정이나 직권에 의하여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소환 조사 • 문서 제출 요구 • 필요한 경우 연방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 확보 • 압수수색시 필요한 경우 경찰관 대동 • 인권위원회는 조사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진정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인권심판소(Human Rights Tribunal)에 회부하고, 판결이 없거나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관계당국에 회부 또는 기각 • 인권심판소는 인권위원회가 회부한 진정에 대하여 심리절차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정인 등 양 당사자가 심판소에 출석하여 증거 제출하고 변론할 기회 부여 -증거채택에 있어서 법원보다 덜 엄격 • 재심심판소는 인권심판소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이 있는 자의 항고에 따라 심리절차 개시 -인권심판소의 기록과 당사자의 제출서류 중심으로 심리 -증거조사 및 증언 실시 	<p>인권위원회, 인권심판소 또는 조사관의 임무수행이나 활동을 방해하는 자, 진정인 또는 증인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약식기소</p> <p>약식기소는 검찰총장 등의 필요</p>
인도	진정이나 직권에 의하여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인소환과 출석강제 및 증인에 대한 선서의무 부과 • 진정인, 피진정인 및 관계공무원 등 관계자 소환조사 • 관계인 및 행정기관 등에 자료제출 요구 • 관련자료 압수수색권 보유 • 총경급 이상의 경찰관을 책임자로 하는 특별수사반을 설치하여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외 기소 • 인권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침해범죄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주정부가 고등법원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지방법원의 민사상급법원을 인권침해범죄 재판을 전담하는 인권법원으로 지정 -주정부가 임명한 특별검사가 인권법원에서 소송 수행 	

국가	조사의 개시	조사방법과 절차	벌칙
필리핀	진정이나 직권에 의하여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정 당사자에게 선서진술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한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고 변호사가 반장인 조사관이 사무소에서 조사 진행 • 직권조사인 경우나 긴박한 경우에는 소명자료 첨부요구 없이 즉시 현장조사 • 진정에 대해 지역사무소에서 먼저 조사여부 결정 후 조사에 착수 • 지역사무소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제심사 청구 • 법원의 재판에 회부할 필요가 있는 사안은 검찰총장에게 이송하고, 직접 법원의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 법원에 이송. 	위원회 운영지침 및 절차규칙 위반행위에 법정모독죄 적용
인도네시아	진정이나 직권에 의하여 조사		

표 10) 국내의 사례

기구	조사의 개시	조사방법과 절차	벌칙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제출요구권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자료제출 요구 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한국은행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참여 요구 	
금융감독원		<p>자료의 제출요구</p> <p>-원장은 검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p>	<p>시정명령 및 정계요구</p> <p>-원장은 검사대상기관의 임·직원이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징계(면직·정직·감봉·견책 및 경고) 요구</p>
한국소비자보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사와 자료제출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제품제조공정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당해 사업자에게 업무보고 또는 관계물품·서류등의 제출명령 부과 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거·파기명령, 범위위반사실의 공표명령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요청하고 사업자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함 	<p>검사의 거부·방해, 기피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p>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직권에 의해 조사	<p>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p> <p>-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p> <p>-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p> <p>-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p>	

기구	조사의 개시	조사방법과 절차	벌칙
공정거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지조사 및 관계인 진술청취 -사업자·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자료나 물건 조사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 청취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 금융거래정보 제출요구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회사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 •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자료 제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의 감정을 한 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 • 과태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거부한 자 -심판정의 질서유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감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산서등의 제출 감사대상자는 계산서·증거서류·조서 기타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서면감사·실지감사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상시 서면감사, 필요시 직원을 현지로 파견하여 실지감사 • 출석담변·서면제출·봉인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담변 요구 -증명서·변명서 기타 관계문부·물품등의 제출 요구 -창고·금고·문부·물품등의 봉인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 범죄 및 망실·훼손등의 통보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회계관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정계처분이 있을 때, 현금·물품·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망실 또는 훼손 사실이 발견된 때는 지체없이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함 •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 제출이나 출석담변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 -감사를 방해한 자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담변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한 자

2. 구제권의 내용과 효력

■ UN의 지침

○ 파리원칙

인권위원회는 진정이나 청원을 다른 관할기관에 이송하고, 청원을 제출한 사람들의 불만을 초래한 관계기관에 특히 법령 및 행정관행의 변경이나 개정 등의 권고의견을 제시함.

○ UN핸드북

-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함에 있어 많은 인권위원회는 조정이나 중재에 의존하며,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일정한 심리후 판정을 내릴 중재절차를 적용할 수 있음.

- 인권위원회가 진정당사자에게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결과를 강제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지만, 인권위원회가 권고하는 해결 또는 적절한 구제책을 무시해서도 안됨.

어떤 경우에는 특별심판기구가 해결되지 않은 진정사건을 심리 결정하고, 특별심판기구가 설립되지 않았다면 최종적이고 구속력있는 결정을 위해 사건을 정식 법원에 이송

<조정>

분쟁의 해결방식은 일반적으로 국가기관과 같은 제3자가 구속력있는 결정을 하는 중재(arbitration), 제3자가 구속력은 없으나 강한 비중을 갖는 권고의견을 제시하는 조정(conciliation), 제3자가 내용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고 결정도 하지 않으면서 과정을 조절하는 중개(mediation)의 3가지가 있는데 인권기구는 후자의 2개 절차와 관련이 있음.

<구제>

- 권고권한(Power to recommend) : 권고의 대상여하에 불구하고 권고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강제적이어서는 안됨.

- 이첩권한(Power to referral) : 조사하였거나 조정을 시도하였던 사안을

다른 정부기관이나 심판기구(tribunal), 의회, 사법부, 검찰 등 다른 관할기관에 회부할 권한을 인정할 수 있음.

- 결정권한(Power to make determinations) : 피해가 회복되거나 경감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적 결정의 취소나 관행·정책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개 사과, 손해배상 또는 보상명령 등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

- 강제명령권한(Power to make enforceable orders) : 당사자가 일정한 기한 내에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권기구가 이를 상위기관(예컨대, 어떤 심판소, 법원이나 검찰)에 바로 이첩할 수 있음. 실제적인 강제절차는 다른 기관의 권한에 속한다 하더라도 강제적 명령을 인정하는 것은 인권침해행위의 조사에 관한 인권기구의 권한을 상당히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

■ 외국의 입법례

○ 캐나다

- 진정처리방법

· 진정이 조사관에 의해 해결되지 않거나 기각(각하)되는 경우 또는 인권위원회에 관할이 없어 관계당국에 회부되는 경우 인권위원회는 조정관을 임명하여 진정해결(화해) 도모

· 진정 제기후부터 진정에 대한 인권심판소의 심리 개시 이전에 당사자들이 화해하는 경우 인권위원회는 그 화해조항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 결정

· 인권심판소는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진정을 기각하고, 사실인 경우에는 차별행위 시정, 손해배상 등의 명령을 내림. 재심심판소도 인권심판소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심사건(진정) 처리

· 인권심판소 및 재심심판소의 명령은 통상의 방법과 절차를 취하거나 연방법원에 사본증명을 등록함으로써 연방법원의 명령이 되어 집행력이 부여됨.

- 벌칙

진정 당사자간의 화해조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5만 달러 이하의

별금형으로 약식기소(검찰총장의 동의 필요)

○ 호주

- 진정처리방법

·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당사자간의 화해를 주선하고 화해 불성립시 조정 시도

▷ 조정 불성립이나 화해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진정인에게 당해 행위나 관행의 재발방지와 금전적 보상 등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를 촉구하고, 장관에게 그러한 권고내용 통보

·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결정과 이유를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종결

- 개별법(인종차별금지법, 성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프라이버시법)위반 차별행위는 조정에 회부하여 실패할 경우 위원회 내부의 반차별심판부에 회부

○ 뉴질랜드

- 진정처리방법

· 진정당사자간의 화해 유도를 위해 회의를 소집하고, 당사자에게 그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담당관은 소환장 발부

- 진정심판소의 종국처분

· 심판청구내용이 사실인 경우

피고(심판피청구인)가 인권법을 위반하였다는 선언, 차별행위 중지명령, 손해배상 명령, 인권법에 반한 계약이 불법계약이라는 선언 등의 구제조치 부여

· 심판청구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심판청구 기각

- 심판소가 내린 명령의 집행력

심판소가 내린 손해배상명령은 지방법원에 등록함으로써 집행력이 부여됨.

○ 남아프리카공화국

- 기본권의 침해행위에 관하여 분쟁해결 및 침해행위 시정을 위해 중재, 조정, 협상 주선

- 진정내용이 사실인 경우 위원회는 자신의 명의 또는 진정인이나 특정 계층을 대리하여 법원 또는 행정심판소에 제소하거나 재정 지원

○ 인도

- 진정처리방법

· 관계기관이나 당사자에게 시정조치 촉구

· 공무원의 인권침해 행위는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토록 촉구하고, 사안이 중할 경우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책임자를 고발토록 촉구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즉각적인 임시구제조치를 관계기관에 권고

· 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관계 행정기관의 조치내역 등은 공표해야 함.

○ 필리핀

지역사무소 책임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법원 등 사법기관이나 관계행정기관 회부결정, 기록보관소 보관결정, 종결처분으로 처리

○ 인도네시아

- 진정처리방법

· 당사자간의 조정, 중재의 방법으로 사건처리

· 진정내용이 인정될 경우, 보고서를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개선조치 권고, 불법체포나 불법구금 등 형사사법 관련 문제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시정조치 권고

■ 국내의 사례

○ 금융감독원

- 금융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 권고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금융분쟁조정위원

회에 회부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심의하여 조정안 작성

-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 권고

- 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당해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조정의 중지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

○ 한국소비자보호원

- 소비자 피해구제의 청구

· 소비자는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 소비자보호원에 청구

· 국가·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 또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피해 구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그 처리를 의뢰

· 피해구제의 청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그 사건의 처리 중지

- 위법사실의 통보

피해구제청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관계인의 위법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 의뢰

- 합의권고

피해구제청구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 권고

- 분쟁조정 절차

· 원장이나 당사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고 분쟁조정에 앞서 이해관계인, 소비자단체 또는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피해구제절차의 중지

피해구제의 처리절차 중에 일방당사자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요청 가능

- 분쟁조정 효력

분쟁조정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공정거래위원회

- 시정권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권고

- 이의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 가능

- 소의 제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회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부과

- 손해배상책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법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벌칙

시정조치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형

- 고발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규정위반 등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

·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함.

· 검찰총장은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

○ 감사원

- 변상책임 판정

감사결과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변상판정서를 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당해 변상책임자에 교부하여 감사원이 정한 기한내에 변상하게 하여야 함.

- 징계요구 등

감사결과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나 해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기한내에 해당 절차에 따라 처분을 행하여야 함.

-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시정 주의 등을 요구하고, 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기타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법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 요구

· 기관의 장은 그 조치 또는 개선의 결과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함.

- 권고

· 감사결과 징계·시정·개선등의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행정운영등의 경제성·효율성 및 공정성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 또는 통보

· 권고 또는 통보를 받은 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함.

- 고발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함.

■ 법무부안과 공대위안

	법무부안	공대위안
합의권고	진정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다는 개연성이 인정될 때에는 피해자 및 피진정인에게 합의 권고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 권고
조정절차의 개시	· 위원회 또는 피해자와 피진정인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진정을 조정 회부 또는 신청 · 조정위원회는 조정회부 또는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조정절차 개시	진정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진정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절차 시작
조정	· 조정은 조정절차의 개시이후 피해자와 피진정인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피해자와 피진정인이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 ·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의 개시이후 피해자와 피진정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진정에 관련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진정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림.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는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피진정인의 사과, 동일 또는 유사한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원상회복·손해배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를 포함함. · 피해자 및 피진정인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 가능	·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 원상회복, 손해배상, 손해보상, 그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는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 원상회복·손해배상·손해보상·그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포함할 수 있음. · 당사자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봄.
조정효력	조정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음.

	법무부안	공대위안
피해자를 위한 소제기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해자를 위하여 위원회의 이름으로 관할 법원에 필요한 소제기
법률구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기타 기관에 법률구조 요청	·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고 위원회의 권고에 소속기관 등의 장이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는 피해자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 · 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를 위하여 법률구조를 결정하고 법률구조법인에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권고 및 의견표명	·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고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를 권고하거나 의견 표명 · 진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 및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 표명 ·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피진정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함.	인권침해가 일어난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사항 권고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고발 수사의뢰 징계	·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국방	·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

	법무부안	공대위안
고발 수사의뢰 징계	부장관에게 고발 · 진정을 조사하면서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의뢰 · 진정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진정인 기타 관계인에 대한 징계를 그 소속기관·단체의 장이나 감독기관의 장에게 권고	·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요구 · 법을 위반한 행위 또는 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검찰총장 또는 관할 군참모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
권고, 처리결과 공표	권고 또는 의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치결과 등의 내용에 대한 공표 가능	위원회는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결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이 한 조치 등 공표
조치결과 통보	· 위원회로부터 권고, 고발, 수사의뢰 또는 징계권고를 받은 관계 국가기관·단체의 장이나 감독기관의 장, 검찰총장, 소속 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권고·고발, 수사의뢰 또는 징계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나 조치계획을 위원회에 통보 ·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관계 국가기관·단체의 장이나 감독기관의 장이 그 조치결과 등을 통보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함.	·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또는 군 참모총장은 고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결과 또는 수사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징계를 요구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긴급구제조치권고 / 임시조치	·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가 계속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 위원회는 진행중인 인권침해를 중지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침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거나 소속기관 등의 장에

	법무부안	공대위안
긴급구제 조치권고 / 임시조치	<p>그 진정에 대한 결정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2.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피진정인의 당해 직무로부터의 배제 3. 진정인 등의 구금·보호장소의 변경 4. 진정인 등에 대한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5. 기타 피해자나 진정인, 참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구제조치 <p>· 긴급구제조치 권고를 받은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함.</p> <p>· 위원회로부터 긴급구제조치 권고를 받은 관계 국가기관·단체의 장이나 감독기관의 장은 그 권고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그 조치결과나 조치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p>	<p>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2.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또는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당해 직무 배제 6. 그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정인, 참고인 또는 증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p> <p>· 임시조치 요구의 경우, 소속기관 등 또는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받은 사항을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이행하여야 함.</p> <p>· 위원회가 하는 임시조치를 방해하거나 조치의 요구를 거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p>

■ 쟁점사항

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권을 보유하는 문제에 대하여

○ 법무부 입장

-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법원의 판결과 같은 구속력을 부여할 경우 인권위원회가 법원을 대체하는 결과가 되어 인권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음.
- 파리원칙에서도 인권위원회는 권고적 차원에서 의견 등을 제출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
- 호주 등 대다수의 외국 인권위원회도 그 결정에 권고적 효력만이 있음.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경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소에 제소하여 손해배상등 구제조치를 구하고 그 명령에는 1심판결의 효력을 부여하지만, 이들 심판소는 사법부 소속의 특별법원으로서 인권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구임.
- 정부의 중요정책을 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하게 되면 법률상의 기구에 불과한 인권위원회가 다른 법률상의 기관뿐 아니라 감사원과 같은 헌법상의 기구까지 귀속시키는 '국가최고정책 결정기구화'되어 국가조직 체계에 일대 혼란 초래
- 인권위원회가 구속력 있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정확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법원의 재판과 같이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는 그 판단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음.
- 법무부안은 인권침해행위의 구제수단으로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 구제조치등의 권고 및 의견표명, 고발·수사의뢰 및 징계권고, 관계 법령·제도 등의 개선권고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의 권고내용에 대한 공표와 국가기관의 존중의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의 이유 설명의무 등을 통하여 위원회 결정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의 결정은 높은 도덕적 권위와 국민여론의 압력으로 사실상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임.

○ 공대위 입장

- 시정권고권의 행사만으로는 인권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적어도 정치적·시민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시정명령권

을 부여해야 함.

- 유엔의 지침도 가능하면 인권위원회가 심판기능을 행사하는 경우 구속력있는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음.
- 캐나다나 뉴질랜드의 경우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한 후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안되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일종의 인권심판소에 회부하여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 법무부안에 따르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은 아무런 효력도 가질 수 없고,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이나 감독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권고를 하거나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고발과 수사의뢰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원회의 절차 그 자체만으로 피해자 권리의 회복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이 아님. 가해자가 승복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원점으로 되돌아가 다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구제수단을 취해야 하는 것은 매우 소모적이며 인권기구의 설치목적에도 위반됨.

■ 소결

○ 파리원칙은 인권위원회의 권고나 구제책이 무시되어서는 안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UN핸드북은 인권위원회가 중재(arbitration)와 같은 구속력있는 결정보다 권고의견을 제시하는 조정(conciliation)이나 과정을 조절하는 중개(mediation)와 관련이 있으며, 권고·이첩·결정·강제명령⁵⁸⁾의 권한을 보유한다고 하고 있음.

○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캐나다에서는 화해조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검찰총장의 동의를 얻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함. 또한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경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소에 제소하여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를 구하고 그 명령에는 1심판결의 효력을 부여함.

그러나 대체로 다른 나라에서는 인권위원회의 구제조치에 권고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음.

58) 당사자가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명령권한을 행사하여 법원이나 검찰등에 이첩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강제절차는 다른 기관의 권한에 속함.(UN핸드북, 문단 279)

○ 국내에서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제기된 금융분쟁조정 또는 소비자피해구제의 신청에 대해 합의권고나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며 그 권고에 구속력은 없음.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시정명령권은 전문행정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권을 갖게 된다면 행정의 전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에 대해 적용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와 시정명령의 대상 및 효력범위가 다름.

○ 인권기구가 구속력있는 명령을 하게 될 경우 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 결정에 불복인 사람은 현재의 재판청구제도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음.

이것은 인권위원회의 조치를 법원의 결정에 종속시킴으로써 인권위원회를 기존의 다른 행정기관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만들고 인권위원회의 설립취지에도 위배됨.

또한 인권위원회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견해와 해석을 수렴·제공하는 최종적·도덕적 권위를 가진 기구가 되는 것을 가로막고, 인권위원회의 독립적 지위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음⁵⁹⁾.

○ 따라서 인권위원회의 권한을 시정권고권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렇더라도 시정권고권이 의도하는 목표를 관철하고 그 효력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추가적 이행확보수단이 필요함.

- 가해자의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구제조치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공개하는 방법, 피해자에게 권리구제에 관하여 조언하고 적극적으로 법률구조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⁶⁰⁾.

- 뉴질랜드에서는 음부즈만이 결정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

59) 또한, 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권을 갖게 될 경우 "기존의 사법절차 외에 또 하나의 법적 권리구제제도를 만들게 되어 두 가지 절차를 놓고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거나 두 기관 사이에 인권에 관한 해석을 둘러싸고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구속력있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절차와 증거조사 과정이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될 수밖에 없어 비공식적이며 융통성있고 신속하며 값싼 대안적 구제절차를 제공한다는 인권기구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음(조용환, 앞의 글, 87쪽 참조)

60) 조용환, 앞의 글, 144쪽 참조

은 경우, 해당 기관에서 제출한 사유서나 권고의 등본을 수상과 하
원의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하여 결정의 이행력을 높이고 있는데⁶¹⁾,
이를 원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무부나 공대위 모두 진정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에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인권
위원회가 긴급구제조치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음.
그러나 긴급구제조치에 권고적 효력만을 주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
기 어려우므로 구속력을 인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형사처벌
하도록 함.
또한 증거의 확보 또는 인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
도록 함.

- 증거의 확보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해자를 위하여 위원
회의 이름으로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함.
가혹행위를 호소하는 피해자나 그 장소에 인권위원회가 접근할 수 없을
경우, 피해자를 위하여 위원회가 관할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거나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그 사례가 될 수 있음⁶²⁾.

61) 뉴질랜드 음부즈만법 제22조
62) 조용환, 앞의 글, 140쪽 참조

표 10) 외국의 입법례

국가	진정처리방법	벌칙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당사자간의 화해를 주선하고 화해 불성립시 조정 시도 - 조정 불성립시나 화해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 는 경우 피진정인에게 당해 행위나 관행의 재발방지와 금전적 보 상 등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를 촉구하고, 장관에게 그러한 권고 내용 통보 •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결과와 이유를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종결 • 개별법(인종차별금지법, 성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프라이 버시법)위반 차별행위는 조정에 회부하여 실패할 경우 위원회 내 부의 반차별심판부에 회부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가 종결되면 그 결과를 진정 당사자에게 통보 • 진정당사자간의 화해 유도를 위해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는 심판담당관이 소환장 발부 • 진정심판소의 가치분 심판소는 심판담당관, 진정인,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심판당사자 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한 가치분 명령 • 진정심판소의 중국처분 - 심판청구내용이 사실인 경우 피고(심판피청구인)가 인권법을 위반하였다는 선언, 차별행위 중 지명령, 손해배상 명령, 인권법에 반한 계약이 불법계약이라는 선 언 등의 구제조치 부여 - 심판청구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심판청구 기각 	*심판소가 내린 손해배상명령 은 지방법원에 등록함으로써 집행력 부여
남아프리카 공화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권의 침해행위에 관하여 분쟁해결 및 침해행위 시정을 위해 중재, 조정, 협상 주선 • 진정내용이 사실인 경우 위원회는 자신의 명의 또는 진정인이나 특정 계층을 대리하여 법원 또는 행정심판소에 제소하거나 재정 지원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정이 조사관에 의해 해결되지 않거나 기각(각하)되는 경우 또 는 인권위원회에 관할이 없어 관계당국에 회부되는 경우 인권위 원회는 조정관을 임명, 진정해결(화해) 도모 • 진정 제기후부터 진정에 대한 인권심판소의 심리 개시 이전에 당 사자들이 화해하는 경우 인권위원회는 그 화해조항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 결정 • 인권심판소는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진정을 기각하 고, 사실인 경우에는 차별행위 시정, 손해배상 등의 명령을 내림 • 재심심판소도 인권심판소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심사건 처리 	진정 당사자간의 화해조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검찰총장의 동의를 요 함) *인권심판소 및 재심심판소의 명령은 통상의 방법과 절차 를 취하거나 연방법원에 사 본증명을 등록함으로써 연방 법원의 명령이 되어 집행력 이 부여됨

국가	진정처리방법	벌칙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이나 당사자에게 시정조치 촉구 • 공무원의 인권침해 행위는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토록 촉구하고, 사안이 중할 경우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책임자를 고발토록 촉구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즉각적인 임시구제조치를 관계기관에 권고 • 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관계 행정기관의 조치내역 등은 공표해야 함 	
필리핀	지역사무소 책임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법원 등 사법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 회부결정, 기록보관소 보관결정, 종결처분으로 처리	
인도 대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간의 조정, 중재의 방법으로 사건처리 • 진정내용이 인정될 경우, 보고서를 관계기관에 송부, 개선조치 권고 • 불법채포나 불법구금 등 형사사범 관련 문제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시정조치 권고 	

표 11) 국내의 사례

기구	진정처리방법	벌칙
금융 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분쟁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원장에게 분쟁 조정 신청 -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관계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 권고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 조정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원장은 이 조정안에 대해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수락 권고 • 조정의 효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당해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조정의 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 • 조사결과 조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시정명령 또는 징계요구 등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당해 직원의 징계(면직·정직·감봉·견책 및 경고) 요구 - 임원의 해임권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지시를 위반한 금융기관 임원의 해임을 임면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당해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에 건의 - 영업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기관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위법행위 또는 비행의 중지, 6월의 범위 내에서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건의 	
한국소비자 보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피해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구제의 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는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청구 - 국가·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 또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처리 의뢰 -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피해구제 청구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사건처리 중지 - 위법사실의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구제청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관계인의 범위반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 의뢰 - 합의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구제청구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 권고 • 분쟁조정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이나 당사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고 분쟁조정예 앞서 이해관계인, 소비자단체 또는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피해구제절차의 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구제의 처리절차 중에 일방당사자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요청 • 분쟁조정 효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쟁조정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기구	진정처리방법	벌칙
공정거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 이의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 시정조치명령의 집행 정지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 결정 -집행정지 결정 후에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결정 취소 소의 제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 제기 가능 손해배상책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법규정의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회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부과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형 고발 -시정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규정위반 등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함 -검찰총장은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
감사원	<p><감사결과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상판정, 징계(문책, 파면, 해임)·시정·개선 등의 처분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함 개선요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 국무총리·소속장관·감독기관의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법령 등의 제정·개폐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 요구 권고 징계·시정·개선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 또는 통보 고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p><재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심의 청구 처분요구를 받은 소속장관·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그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할 경우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 가능 재심의청구의 처리 -재심의의 청구가 그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각하 	

기구	진정처리방법	벌칙
감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심의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각하고 재심의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처분 요구의 취소나 내용 변경 직권재심의 감사원은 판정을 한 날부터 2년이내에 그 판정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 재심의의 효력 -청구에 의하여 재심의한 사건은 또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음. 다만, 감사원이 직권으로 재심의한 것에 대하여는 재심의의 청구 가능 -재심의판결에 대하여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 제기 가능 <p><심사청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의 청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는 감사원에 심사 청구 가능 심사청구의 심리 심사청구의 심리는 심사청구서 기타 관계기관이 제출한 문서에 의하여 행함. 필요시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나 필요한 조사 가능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심사의 청구 및 제척기간의 요건, 규칙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때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때에는 각하 -심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며 심사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각 행정소송과의 관계 청구인은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 제기 가능 일사부재리 심사 결정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음. 	
방송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명령 방송사업자 등이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방송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시정을 명함 제재조치 방송사업자 등이 심의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조치를 명함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중지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방송사업자 등은 지체없이 제재조치 명령내용에 관한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고, 7일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방송위원회에 보고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방송위원회에 재심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과태료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V. 결론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부합한 지위와 권한 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인권위원회가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되고, 국가로부터의 독립성과 직무의 공정성 및 활동의 적극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거 '독립된 국가기구'로 설립되어야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직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음.

- 위원 및 직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고, 비밀누설금지·검직금지·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 등과 같은 의무와 책임을 부과받음.

- 위원장과 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나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함.

또한 4년의 임기가 보장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함.

- 위원과 직원, 그리고 위원회의 위촉 또는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은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라 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특권을 부여받음.

- 위원장은 예산회계법상 '중앙관서의 장'으로 간주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가 독자적인 예산요구권을 보유함.

-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발언하고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인권관련 법령에 대하여 국회와 국무회의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받고, 위원장은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답변하여야 함.

-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를 국가의 인권상황 전반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인권개선 대책을 제안하는 '인권보고서'로 작성·공표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사 및 구제권을 가짐.

- 헌법상 기본적 권리 또는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권리의 침해와 모든 차별행위를 조사함.

-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국가기밀사항이나 “오로지 계류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명할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없고, 이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사실조회에 대해 회답할 의무를 가짐.

그러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수사기관 또는 재판기관이나 그를 보조하는 자의 행위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제기된 진정에 대해서는 조사의 제한이 없음.

- 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또는 징계요구를 함.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집행함.

증인과 감정인에 대해 신문할 수 있고, 허위의 증언이나 감정은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함.

- 인권위원회의 구제조치는 시정권고의 효력을 가지지만, 시정조치의 효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 이행확보수단을 도입함.

그러나 긴급구제조치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인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형사처벌함.

또한 인권위원회의 이름으로 피해자를 위한 소를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인권위원회 설립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민간단체가 상호간 견해의 차이와 불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국회가 양측간의 ‘화해’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바탕으로 ‘조정’과 ‘중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때임.

국회의원 천 정 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12호

전화 : 02-788-2428 전송 : 02-788-3512

홈페이지 : www.jb21.or.kr

E-mail : webmaster@jb21.or.kr